

근로감독관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8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이병도, 권수정, 김경영,  
김기덕, 김인호,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박기재, 박상구, 서윤기,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이경선, 이영실,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조상호, 최 선,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30명)

## 1. 주문

-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의 설치와 운영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이나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으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권리구제나 산업재해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위임받아 노동현장에서 위법행위를 감독·단속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요청을 지속해 왔음.
- 또한, 국회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976호 및 제2104997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근로감독기관을 중앙 국가기관에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부정적임.
- 하지만, 지역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현장 안전시각지대 최소화와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건의함.

## 2. 제안이유

- 최근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근로감독권한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에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충분한 근로감독인력을 확보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건의함.

### 3.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조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근로감독권한과 그에 따른 근로감독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합법적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보장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2012년 1,241명에서 2021년 3,016명으로 2배가 넘게 증원되었으나 200만여 개의 전체 사업장 중에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전체의 2.5%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이나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노동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조치,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는 어려운 상태이다.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평택항 화물적재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사고도 사전에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으로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감독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많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달라는 요청을 지속해 왔고, 국회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근로감독기관을 중앙 국가기관에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ILO협약 제81호제5조는 국가단위의 일률적인 근로감독 기준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그 밖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과 협력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권한의 완전한 이양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LO협약의 취지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권한을 요청하는 것을 ILO협약을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여 노동현장 안전시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